

[별표 2]

외국환 위험관리 예시기준(제3-8조관련)

1. 위험종류별 관리내용

| 구 분   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--|--|
| 가. 국가별위험    | (1) 국가별 대출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% 이내로 관리함. 다만,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(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)인 국가의 경우 5% 이내로 하고, 이들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30% 이내로 하며,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<br>(2) 국가별 대출은 외국소재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차주본인, 본사 또는 모기업의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 |
| 나. 거래신용위험   | (1) 거래처별 대출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% 이내로 관리함. 다만,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(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)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5% 이내로 관리<br>(2) 거래처라 함은 동일기업의 본지점과 그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포함   |
| 다. 파생금융거래위험 | (1) 거래시점에서 위험회피거래(헷지거래)와 여타거래(트레이딩거래)로 구분하고 헷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등에 기초자산(통화, 금리, 주식, 기타)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자산별로 구분관리<br>(2) 거래업무담당과 계리업무담당을 분리하여 상호견제체제를 유지<br>(3) 트레이딩거래 전체에 대하여는 기초자산별 최대가격변동 위험치(통화 및 금리의 경우 10%, 주식·기타의 경우 20%등)를 적용한 손실허용 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<br>(4) 트레이딩 거래에 대하여는 취급점포별 및 달러별로 거래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설정·관리<br>(5)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%를 초과하는 거액거래,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거래는 자체 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 취급<br>(6)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·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(historical-rate roll over)는 금지 |
| 라. 시장위험     | (1) 국내외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미만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총 외화유가증권투자액의 30% 이내로 관리<br>(2)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금이 투자원금의 20%를 초과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실시  |

## 2. 대출금액, 신용등급 및 자기자본의 범위(예시)

| 구 분     | 내 용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가. 대출금액 | 대출금액에는 외화대출금을 말함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나. 신용등급 | <p>(1)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2">투자등급</th> <th rowspan="2">투자등급미만</th> </tr> <tr> <th>우 량</th> <th>양 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&amp;P</td> <td>AA- 이상</td> <td>BBB-~A+</td> <td>BB+이하, 또는 무등급</td> </tr> <tr> <td>Moody's</td> <td>Aa3 이상</td> <td>Baa3~A1</td> <td>Ba1이하, 또는 무등급</td> </tr> <tr> <td>IBCA</td> <td>AA 이상</td> <td>BBB~A</td> <td>BB이하, 또는 무등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2)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평가 A등급 또는 회사채평가BBB-이상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분류</p> <p>(3)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</p> |         | 투자등급          |  | 투자등급미만 | 우 량 | 양 호 | S&P | AA- 이상 | BBB-~A+ | BB+이하, 또는 무등급 | Moody's | Aa3 이상 | Baa3~A1 | Ba1이하, 또는 무등급 | IBCA | AA 이상 | BBB~A | BB이하, 또는 무등급 |
|         | 투자등급  |         | 투자등급미만       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| 우 량   | 양 호     |              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S&P     | AA- 이상  | BBB-~A+ | BB+이하, 또는 무등급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Moody's | Aa3 이상  | Baa3~A1 | Ba1이하, 또는 무등급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IBCA    | AA 이상   | BBB~A   | BB이하, 또는 무등급 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다. 자기자본 |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여력 금액. 다만, 자본잠식인 경우에는 지급여력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